

##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

출입국관리법 제7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증가산금을 부과하고,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5. 1. 24.

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장



1. 제목 : 출입국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5. 1. 28. ~ 2025. 2. 11.
3. 대상자 : MAKHMUDOVA SARVINOZ 등 2명 [붙임]
4. 공시송달 내용
  - 가. 위반내용 : 출입국관리법 제79조
  - 나.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 심사지원과에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 - 다. 기타 관련 문의는 인천공항출입국·외국인청 심사지원과 (담당공무원 이상혁, ☎ 032-740-7393)로 연락바랍니다.

붙임: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

## 【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】

연 번	국적	성명	생년월일	위반내용	과태료 (가산금포함)
1	우즈벡	MAKHMUDOVA SARVINOZ	1993.00.00.	출입국관리법 제79조 (허가신청등의 의무자)	일백오십삼만사천원 (₩ 1,534,000)
2	남아프리카 공화국	NYEMBE SINDISIWE BRENDA	1984.00.00.	출입국관리법 제79조 (허가신청등의 의무자)	일백사십칠만사천원 (₩ 1,474,000)